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약사법」 일부개정법률(제21109호) 개정 · 공포 알림

1. 「약사법」 일부개정법률(제21109호)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·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주요 개정 내용 (식약처 부분)	관련 조항
○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 -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 보완(시행: '26.11.12.) -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확대 · 개편(시행: '26.11.12.) -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· 연계(시행: '26.2.12.) - 한국희귀 · 필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 명시(시행: '26.2.12.)	제2조 제47조의3 제83조의5 제92조 등
○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'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' 설립 근거 마련 (시행: '26.11.12.)	제2조 제90조의4 제90조의5 등

2. 동 개정법률은 2025년 11월 11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(제21109호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관계 기관(단체)

주무관

이연진

사무관

이경

의약품정책과 전결 2025. 11. 11.

장

김춘래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정책과-9662

(2025. 11. 11.)

접수

우 28159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
처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621

팩스번호 043-719-2606

/ yj9362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
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